

1. 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서류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을 추가함
- 2)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통지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9조의5)

-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추가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

-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보내야 함
- 3)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등기우편 또는 교부”를 “등기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호 중 “이행명령”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으로 한다.

제2장의2(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3.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6.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지급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

로, “양육부·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①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5. 사망·실종·혼인 등 가족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양육현황 등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 중지에 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중지·변경 통지서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통지) 영 제17조의8제3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법 제21조의10제1항 및 영 제17조의9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

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2. 양육비 선지급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 확인조사, 반환명령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중지·변경 등 변동관리
5. 양육비 선지급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6.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현황관리
7.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통지 및 송달, 분할 납부, 독촉,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등 회수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8. 그 밖에 원활한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일자”는 “접수일”로 하고,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득금액증명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본 증을 소지한 자는”은 “이 증을 지닌 사람은”으로,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4,6층 대표번호”를
“대표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법원의 일시
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제9조의6제2항 관련)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6. 차상위계층확인서
7. 한부모가족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임야대장
10. 토지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3. 건축물대장
1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5. 주택가격확인서
16. 선박원부
17. 자동차등록원부
18. 사업자등록증명
19. 임대사업자등록증
20. 휴업사실증명
21. 폐업사실증명
22. 소득금액증명
23. 납세사실증명
24. 납세증명서
2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6. 공무원연금내역서
27.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3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31.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 32. 자동차등록증
- 3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3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36.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비혼 가족 유형 [] 조손 가족 [] 다문화 가족 [] 그 밖의 유형						
	신청자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재학 상태	비고
※ 신청자녀란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만 기재합니다.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마다 피신청인이 다른 경우 피신청인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유 []무
---------------------------------	-----------

지원서비스 선택 (순차지원/복수선택 가능)	지원 서비스 내용
[] 협의성립 지원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결정 지원
[] 법률 지원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자녀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확보 소송(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
[] 채권추심 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변제 촉구, 세금환급예정금액 압류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 분		제출 서류 목록
□ 지원종류별 제출 서류	협의 성립 지원	- 해당 없음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채권 추심지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및 그 송달/확정증명 원) 각 1부
<양육비 이행지원의 내용 및 절차(당사자에 따라 지원내용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지원 - 비양육 미혼·이혼 한부모: 협의 성립 지원		

제 호
조사직원증
사진 (2.5cm×3cm)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 0000팀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하는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인]

앞면
54mm×86mm(플라스틱)

이 증을 지닌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www.childsupport.or.kr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뒷면
54mm×86mm(플라스틱)

명단 공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피신청인과의 관계 이혼 [] 비혼 []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주소		
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자택 주소 또는 근무지 주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명단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앞쪽)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작성방법

- 1) 양육비 채권자만 신청 가능
- 2)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3)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란에 √ 표시
-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손)자녀) 모두 기재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양육비 채권자가 양육시) 모두 기재
※ 선지급 신청이 되는 미성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수 기재
- 5)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 부담조서, 판결 등) 상의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지급일자, 금액(일시금 지급명령 금액은 제외) 기재.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고, 양육비 지급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작성
- 6)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이행 받지 못한 양육비 총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에 √ 표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
- 7)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신청인의 자녀 명의 계좌 기재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8)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선지급 결정, 반환명령 등 추후 통지되는 서류를 종이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고지.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전자고지 신청 철회 가능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및 가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가족사항에 명시한 모든 가구의 동의 필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2.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서 등)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6. 그 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6. 차상위계층확인서 7. 한부모가족증명서 8. 장애인증명서 9. 임야대장 10. 토지대장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3. 건축물대장 1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5. 주택가격확인서 16. 선박원부 17. 자동차등록원부 18. 사업자등록증명 19. 임대사업자등록증 20. 휴업사실증명 21. 폐업사실증명 22. 소득금액증명 23. 납세사실증명 24. 납세증명서 2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26. 공무원연금내역서 27.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32. 자동차등록증 3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수급자확인서 3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 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 증명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36.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안내사항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거나 ②잘못 지급된 선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4)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5) 사망·실종·혼인 등 가족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양육현황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조사·확인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결과 통지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11제4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가구원**(신청인(대상자)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중 신청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선지급 신청이 되는 미성년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목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개인정보는 지원종료 후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지원,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3항에 따라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제공 기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
제공 목적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주소,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지원종료 후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지원 및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3항에 따라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 귀하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담당 직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대상자)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사무 (이용목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연금(경증)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담당 직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1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2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가구원3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 귀하

양육비 선지급 **[] 적합** **결정통지서(신청인용)**
[] 대상제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1.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녀명	신청인과의 관계	선지급금(월)	선지급 시작 달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년 월

**[]
적합**

2. 지원금액은 선지급 결정이 통지된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성년의제 포함)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 (2)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 (4)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 (5) 사망·실종·혼인 등 가족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양육현황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이후 해당 월까지 이행받지 못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을 받아 선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제외**

귀하가 신청한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양육비 선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제외 사유>

- [] (1)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미충족)
- []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3)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등의 요건 미충족
- [] (4) 그 밖의 사유(양육비 채권의 종류 등) :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통지서(채무자용)

양육비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지급 신청인	성 명			

1.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녀명	신청인과의 관계	선지급금(월)	선지급 시작 달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년 월

2.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성년의제 포함) 지급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이 속한 달 이후 정기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될 예정입니다. 단, 양육비 선지급이 일부 취소·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참고사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 안내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채권금액·채권자의 변동 등으로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 취소 [] 중지 [] 변경 통지서(대상자용)

선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취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사유:)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	선지급 시작 달	선지급 취소 대상 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년 월	~

2. 유의사항

(1)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반환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2) 반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에 대한 반환명령 통지서가 송달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임을 입증하여 해당된 경우, 면제·감경 후 반환금액은 반환명령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사유	선지급 중지 결정월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년 월

<중지 사유>

[] (1)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 (2)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받음

[]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4)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 (「민법」 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 포함)

[] (5) 그 밖의 사유 :

[]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 등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선지급금(월)		선지급 변경 결정월
		당초	변경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원	년 월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 취소 ☐ 중지 ☐ 변경 통지서(채무자용)

※ 뒤쪽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양육비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선지급 대상자	성 명			

☐ 취소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선지급금	선지급 시작 달	선지급 취소 대상 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년 월	~

2. 선지급 결정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선지급 대상자가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선지급 시작 후 취소 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다면, 선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중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이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선지급 중지 결정월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년 월

<중지 사유>

- ☐ (1)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 미충족)
- ☐ (2)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된 경우 (「민법」 제826조의2에 따른 성년의제 포함)
- ☐ (3) 그 밖의 사유

☐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 등의 변동으로 아래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지급 변경이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자녀명	대상자와의 관계	선지급금(월)		선지급 변경 결정월
		당초	변경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원	원	년 월

※ 업무담당자: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안내사항

1. 선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 선지급 결정이 '취소' 된 경우,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은 별도로 발송되는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안내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명령 통지서 (○ 차)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지원자녀명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① 반환명령 금액				원
② 이자				원
③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④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⑤ 납부한 금액				원
⑥ 이번 납부대상 금액(④-⑤)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납부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납부방법	계좌이체 (예금주/은행/계좌번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안내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납부 기간 경과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분할납부 신청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 (○차)

양육비 채무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성명		지원자녀 성명	
회수 사유	① 선지급 금액	원		
	선지급 기간	년 월 ~ 년 월		
② 납부한 금액	원 (※ 기준일자: 년 월 일)			
③ 이번 회수 대상 금액(①-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납부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납부방법	계좌이체 (예금주/은행/계좌번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1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에 대한 회수를 통지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

안내사항

1.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 채권금액·채권자의 변동 등으로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분할납부 신청서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연장시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 종류	[] 양육비 선지급 결정 [] 양육비 선지급 취소·중지·변경 []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명령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처분을 받은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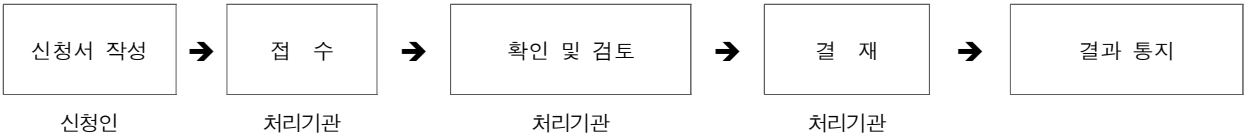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귀하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양육부·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	다.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⑤·⑥ (생 략)

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삭 제>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
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
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등본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
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
액증명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양육비 채권
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
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
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한시
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
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등) <삭 제>

원을 받게 되는 경우

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2. 3.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의3(이의신청의 방법) <삭제>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기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

-----.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

-----.

1. ----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

2. 3.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

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3.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5.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6.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선지급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
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
급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
2조제3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
육부·모등”은 “선지급 신청인”
으로 본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행관리원
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신 설>

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내용 및 방법) ①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 7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신 설>

<신 설>

변동되는 경우

5. 사망·실종·혼인 등 가족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양육현황 등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하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 중지에 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중지·변경 통지서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 서식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 서식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통지) 영 제17조의8제3

<신 설>

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법 제21조의10제1항 및 영 제17조의9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3(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2. 양육비 선지급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3.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 확인조사, 반환명령 등 사후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4.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중지·변경 등 변동관리

5. 양육비 선지급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6. 양육비 채무자 및 양육비 선

지급금 회수 현황관리

7. 양육비 선지급 회수를 위한

통지 및 송달, 분할 납부, 독

촉,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

른 징수 등 회수관리 업무의

전자화 및 처리지원

8. 그 밖에 원활한 양육비 선지

급 및 회수를 위하여 여성가

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